

2025년도 『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포스코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본 공고는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협업기관이 중소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I.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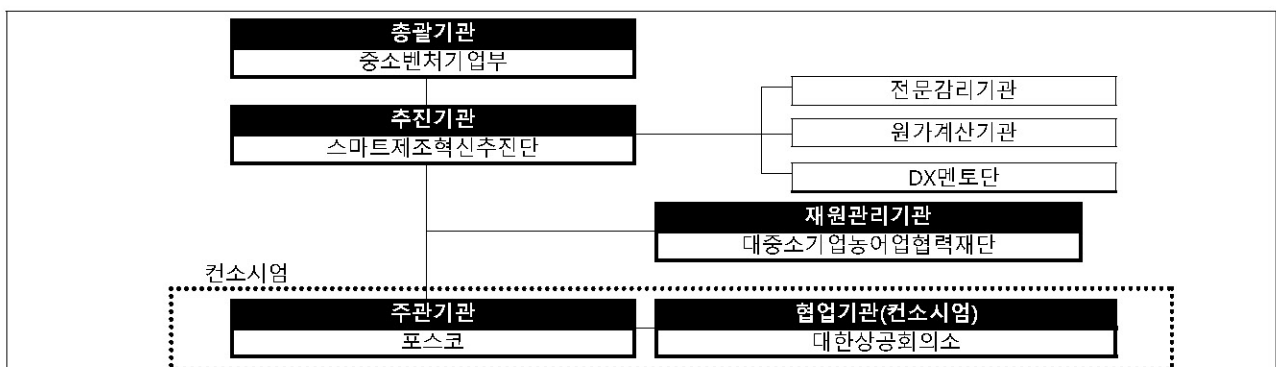
- Industry 4.0 시대, 미래형 제조공장 기반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

II. 사업 지원계획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협약일 ~ 2025.12.
- 지원 분야: 유형1(고도화)
- 지원 규모: 총 6개사 내외(고도화 6개사)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체계



□ 지원 내용

- (구축비용 지원) 포스코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구 분	지원조건	정부	포스코	중소기업
총 구축비용	유형 1 고도화	30%	30%	40%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회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 조건

구분	지원유형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최대)	포스코 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유형1	고도화1	4억원	1.2억원 (총사업비 30%)	1.2억원 (총사업비 30%)	9개월
	고도화1 (동일수준)	1억원	0.3억원 (총사업비 30%)	0.3억원 (총사업비 30%)	6개월

* 구축 완료 후 수준 확인, 구축 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동일수준' 관련 내용은 아래 신청 자격 기타 사항란 참고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사업기간은 최대 9개월(동일수준 6개월), 만기 1개월전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신청 자격

구분	지원 유형	신청자격		지원구분	
		기업규모	목표수준	협력사	비협력사
도입 기업	고도화	국내 중소 제조기업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기업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
	고도화 (동일 수준)		- 고도화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 中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청 자격 기타 사항

- * 국내 중소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포스코-상생형 사업 한정)
-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로그인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既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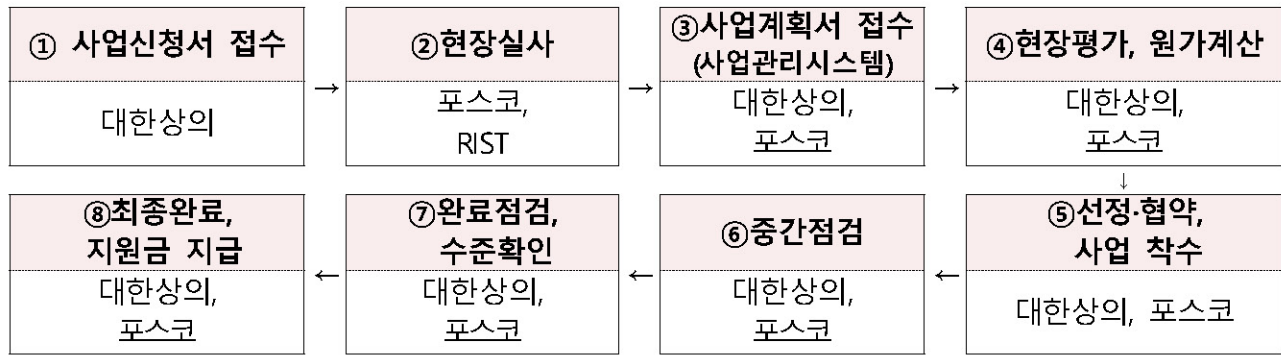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23일(금) 18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 방법) csa426@korcham.net 메일 접수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분	제출 서류
1-1	사업신청서 (원본 엑셀파일)
1-2	사업신청서 (인감 날인 후 스캔한 PDF 파일)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3	도입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이내)
4	도입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5	도입기업·공급기업 대표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6-1	(우대)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사 납품/구매 계약서 1부
6-2	(우대)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사의 거래기업 대상 납품/구매 증빙 서류 1부 * 1차 거래사가 아닌 2차 또는 3차 이하 거래사의 경우
7	(우대) 뿌리기업 확인서 1부
8	(우대) 포스코 QSS 제조혁신,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등 혁신활동 참가 확인서 또는 예정이 기재된 서류 1부 * '우대 대상'란 참고

※ 참고 사항

- 사업신청서는 일정배수 이상 접수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기업은 포스코 추진지원단의 사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 이후 희망 기업은 구축 기간 중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의 현장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절차(접수~사업 착수 단계까지 3~4개월 소요)



* 구축완료 후 수준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완료점검에서 수준측정)

□ 선정 절차 및 방법

- 평가 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최종심사 등

포스코 스마트공장 추진지원단 위원 공동 심사

* 서류심사 시 전수 전화 인터뷰 실시 예정이며, 서류심사 통과 시 현장실사 관련 방문 일정 및 준비사항 추후 별도 안내

- 우대 대상

·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사 거래 기업(2차, 3차 등 간접 거래 기업 포함) · 포항 또는 광양 소재 기업 · 주조주물 등 뿌리기업 ·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안전 등 · 포스코 QSS 혁신, 일터혁신 컨설팅 등 혁신활동 참여 또는 예정기업 *일터혁신 컨설팅은 2025년 신청기업에 한하며, 수행기관이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 중인 기업은 '25년 사업신청 가능)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마지막 항목을 제외한 소항목은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 · 포스코 또는 포스코그룹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 | |
| · 신용평가기관 기업규모 분류상 중견기업/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서 제출 시점에 이미 他스마트공장 '25년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중복 제출 예정인 도입기업 | |

□ 기타 사항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 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 등록 가능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S/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 교육,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 당 사업에 선정된 도입기업 중 희망기업은 당사가 운영 중인 철강 ESG 상생펀드 특별대출 절차를 통해 사업 참여기간(최대 1년)동안 도입기업 자부담 비용(최대 1.6억원)이내에서 저리대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음. (단, 은행의 여신 판단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

구분	세부내용
①사업관리 교육 (온라인)	- 대상: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추후 별도 안내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대상: 도입기업 - 내용: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붙임2, 3 확인]

-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별도이며, 지원금에 대한 부가세는 도입기업이 부담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도입기업에 있음
 - 본 사업은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을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이전에 공급기업 매칭을 완료해야 함,
-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도입기업에 지급함
- 총 사업비 중 최대지원금 초과분은 도입기업이 부담
- 특정 분야, 특정 공급기업의 신청이 많을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할 경우, 스마트제조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붙임 4의 나 확인), 포스코 내규에 따라 향후 포스코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III. 문의 및 연락처

☐ 대표 문의처

- 대한상의 산업혁신지원팀(02-6050-3857, csa426@korcham.net)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문의사항	연락처
주관기관	포스코	도입기업 모집일정, 모집방법, 심사결과 등	02-3457-1018 peoplestone@posco.com
			02-3457-0953 gitaekoh@posco.com
			02-3457-1341 gyo333@posco.com
협업기관	대한상의	지원자격, 제출서류, 우대사항, 기타 사업관리 등	02-6050-3857 csa426@korcham.net

붙임 1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교육 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교육 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 (교육 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 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 비용) 무료 또는 유료
 - (신청 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

붙임 3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교육기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삼성,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장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단, 대규모 기업 재직자는 일부 비용 발생)
- (신청방법)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 신청
※ 세부 월별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문의) 김정섭위원(054-470-2704, jsub.kim@samsung.com)
- (교육과정) 총 31과정 운영

경영자	스마트팩토리 추진리더 (임원급 인력) 스마트공장 추진방향, 추진사례, 우수업체 벤치마킹			
중간관리자	마스터 양성 스마트팩토리 4대 솔루션 기술분야별 실습, 우수업체B/M		현장혁신리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제조원가, 스마트팩토리 품질관리	
실무자	공장 운영시스템 (5과정)	공정 시뮬레이션 (3과정)	제조 자동화 (7과정)	초정밀 가공 (1과정)
	현장혁신(11과정) 모델공장 현장학습 / 현장혁신기본 / 창고관리 개선기법 / 낭비개선 / 공정개선 / PRO-3M / 제조물류 / 품질혁신 / 공정품질관리 / 자재관리 / 품질기본			

붙임 4

제재조치 규정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 기간 [별표3]	환수 금액 [별표4]	근거 법조문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5년 이내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법 제31조 제1항제1호
① 지원사업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② 외부압력, 부정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우	5년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③ 사업의 참여 및 수행과정에 있어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 사업추진 시 협약서에 정한 내용과 반하는 내용 또는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의 이면계약(이행각서) 체결을 담합한 경우를 포함	5년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④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세금계산서 역발행 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담합하여 리베이트(페이백)을 주고받은 경우 * 페이백 : 협약서상 정해진 사업비를 지급한 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행위	5년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이내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법 제31조 제1항제2호
① 폐업, 파산, 회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년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② 천재지변, 대표자의 사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③ 정책상 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판단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	-	-
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지원금 전액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 기간 [별표3]	환수 금액 [별표4]	근거 법조문
라.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3년 이내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법 제31조 제1항제4호
① 사업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년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①	확정하여 납부하도록 통보한 제재환수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년	-	-
②	사업참여제한이 없는 사업비 환수 제재조치 후 폐업, 파산, 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	-
바.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년 이내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법 제31조 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24조 제1항
①	지원사업의 수행이 지속적으로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평가가 부실구축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 각종 점검결과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②	세부관리기준, 협약서상의 과제 수행 절차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여 총괄기관,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년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③	세부관리기준, 협약서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④	세부관리기준, 협약서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착수계, 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⑤	협약기간 종료 후(사업완료 후)의 사업장 유지의무(유지관리 의무기간), 로그기록 제출 의무 등 도입기업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⑥	공급기업이 협약에 따른 사업수행을 공급기업 컨소시엄 등이 아닌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3년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 기간 [별표3]	환수 금액 [별표4]	근거 법조문
⑦ 공급기업이 협약기간 종료 후(사업완료 후) 협약서상 기재된 기간의 무상유지 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	-
⑧ 운영기관이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3년	해당년도 운영비 전액환수	-
⑨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해당년도 운영비 전액환수	-
⑩ 운영기관이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해당년도 운영비 전액환수	-
⑪ 운영기관이 천재지변, 감염질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운영비 정산 후 환수	
⑫ 스마트제조 전문가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년	지급분 전액 환수	
⑬ 스마트제조 전문가가 점검, 컨설팅 등 업무 시 중복수행 불가사항 등을 위반하여 수당을 초과지급 받은 경우	1년	중복수당 지급분 환수	
⑭ 스마트제조 전문가의 불성실 수행 등이 확인되어 스마트제조전문가로서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불성실 수행 건 지급분 환수	
⑮ 감리기관이 사업관계자와 담합 또는 단독으로 사실과 다른 부실·허위로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감리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3년	부정사업 수행 해당 건 환수	
⑯ 감리기관이 협약기간 중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3년	정산 후 환수	
⑰ 감리기관이 추진기관의 승인없이 참여 인력, 과업범위, 협약기간 등 사업수행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부관리기준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년	지급분 전액 환수	

nts.go.kr 국세청



[첨부 ②-1]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 / 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호 서식】(2024.4.17.개정)

발 급 번 호	사 업 자 등 록 증 명 (법인사업자)		처 리 기 간
0708-636-8060-226			즉 시
상 호 (법 인 명)	대한상공회의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4-82-03690		
성 명 (대 표 자)	최태원		
대 표 유 형	단독대표		
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0003887		
사 업 장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로4가)		
개 업 일	1981년 12월 29일		
사 업 자 등 록 일	1981년 12월 29일		
업 태	제조, 서비스/금융및보험/서비스/서비스 (사업관련) 업 서비스/서비스		
종 목	출판, 광고 /공제업/소프트웨어 위탁교육훈련서비스/유통정보관련용역/기타사업지원서비스		
공 동 사 업 자	성명(법인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 민 (사업자) 등 록 번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년 4 월 17 일			
접 수 번 호	603906102752		
담 당 부 서	민원봉사실		
담 당 자			
연 락 처	02-2260-0223		
남대문세무서장 (인)			



- * 본 증명의 위·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 민원증명(증명발급) > 민원증명 원본확인」에서 발급번호로 확인,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본 증명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